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료

비고

1. "투자 방법"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제8조의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 사업"란은 외국인 투자의 직접 대상이 되는 사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투자 비율"란은 투자에 따른 기업의 외국인의 자본비율을, "일자"는 투자금액의 입금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